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7. 24(수),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목 차

##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선착장 조성 등	공개
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화순항 개발 사업	공개
3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내 교량 설치 등 도로 개설	공개
4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연산호 보호 및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	공개
5	「평창 백룡동굴」 관람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 위탁	공개
6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 - (1)	공개
7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 - (2)	공개
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공개
9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광고탑 설치	공개
10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휴게실 신축	공개
11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	공개
12	「장수 하늘소」 포획 및 인공 증식	공개
13	「함양 상림」 조형물 설치	공개
14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15	「영월 고씨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6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허용기준 조정	공개
17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 【검토사항】

18	「삼척 준경묘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9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 【보고사항】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	----

## 1.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선착장 조성 등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선 운항 및 선착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5차 위원회 심의시 부결되어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 '13. 5.22 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 결(선박운항항로에 대한 검토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선착장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5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 생태탐방선 운항
      - 운항구간 : 을숙도-맥도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화명생태공원(14km)
      - 운항시기 : 4월~10월(철새도래시기 운항금지)/09~18시/주중 1일2회/주말1일3회
      - 운항속도 : 10노트(18.52km/hr)
      - 선박제원 : 20톤급(L=20m / 선폭(B)=4.5m / 30~50인승)
    - \* 을숙도 선착장

			( )
		-	7
( )		㉠ ㉡	-
		㉢ ㉣ ㉤	-
			㉥ ㉦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정기적인 생태탐방선 운항에 따른 철새서식 여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5.16)

### < \*\*\* 문화재위원 >

- 사업지는 현재 어선 등의 선박이 운항하는 수로상에 위치하며 소규모의 잔교(수면부)와 이동식 관리동 및 화장실(육상부)로 철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곳 선착장이 조성되면 유람선이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상류의 맥도 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등을 경유하면서 화명생태공원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있어 철새의 월동 및 번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을숙도에는 이미 남쪽 하단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탐방체험용 선박이 1코스(상류탐방: 갑문을 거쳐 화명생태공원까지), 2코스(하류탐방: 대마등, 진우도, 가덕도 등)로 운행하고 있으며, 상류에도 맥도와 엄궁에 선착장이, 장인도, 삼락, 대저, 화명 생태공원에 계류장 또는 나루터가 조성되어 있어 선착장 추가조성은 유람선 운행의 활성화를 가져와 철새보호에 역행하는 셈이 된다고 사료됨

### < \*\*\* 문화재전문위원 >

- 물새들은 유람선 운항코스로 나 있는 맥도생태공원 선착장,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대저생태공원치수호안, 화명생태공원계류장에 흩어져 물위에서 무리를 지어 잠자리(roosting area)를 만들고 있음.
- 철새들의 채식 및 휴식공간인 이들 지역에 유람선 계류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철새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우려됨.
- 본 신청건 관련 선착장 조성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유람선 운항에 따른 철새도래지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됨.

## 바. 의결사항 : 보류

## 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화순항 개발 사업

### 가. 제안사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내 화순항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2차 위원회 심의시 잠제설치 건과 연계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어 금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13.2.27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잠제설치건과 연계하여 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 문연로 6)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역 일원
  - 지정일 : 2004. 12. 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방파제 건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및 사계리 인근 해상
  - 사업내용

		m	4	A : 5	B : 5	C : 5
		m	9			
		m	9	5	,	5
		m	6	6		1
		m	6	6		
		m	4			5
		m	2			
			5			: 9
			5			: 9
			1			
			1			,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7. 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일부 지역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주연안의 연산호 군락, 산방산,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문화재구역 및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허용기준상 관련법 처리되어 있음. 다만, 잠제설치에 따른 사계리 용머리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3.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내 교량 설치 등 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강정3교) 설치 및 「제주 강정동 담팔수」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교량설치 및 「제주 강정동 담팔수」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13.6.26.)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이식계획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제주민\*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544호 제주 강정동 담팔수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강정동 5647
  - 지정일 : 1964.1.31 / 2013.4.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강정3교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외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연장 3.5km, 폭 15.5~25.5m(양방향 2~4차로)
    - 교량설치 : Beam 교량(DR 거더교, 길이 120m)
      - \* 주변으로 큰 녹나무를 식재하여 자생지 보존
      - \* 수목제거 최소화를 위한 이식 증대(전체 83주 : 당초 58주 → 변경 77주 이식)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13.6.26.)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이나, 식재 및 이식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 및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3.6.24)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본 현상변경 신청 건은 천연기념물 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를 지나는 진입도로 개설이 목적이나, 동 지역은 하천 좌우 계곡에 여러 종류의 난대성식물과 함께 녹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학술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임
- 녹나무 자생지인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계획은 주변 지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높게 그리고 길게 설치(교량길이 120m, 폭 25m)되므로 지형 훼손이 심하고 이로 인해 생태환경 변화는 물론 경관저해가 예상됨
- 교량으로 훼손이 예상되는 다양한 식물은 선택적으로 이식 한다지만 입지 조건(암반)상 이식이 어렵고 특히 녹나무는 이식이 까다로운 수종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녹나무 자생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위치변경 등의 계획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4.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연산호 보호 및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연산호 보호 및 관광자원화에 따른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연산호 보호 및 관광자원화에 따른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13년 제4차(4.17) 및 제5차(5.22)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에서 문화재 훼손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어 부결된 사항으로 향후 운영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외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문섬(새끼섬) 연산호 보호 및 관광자원화에 따른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 주변
  - 사업내용 : 다이빙 전용선 계류시설(바지선) 설치, 거치(비고정)
    - 직사각형(철재 및 고무타이어) 8m × 4m × 1.4m, 닻 4개소
  - \* 향후 수중 문화재해설사 양성 및 수중 가이드 제도를 통한 연산호 보호와 수중정화 작업 등을 통한 지킴이 활동 시행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제4차 및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에서 문화재 훼손 및 경관저해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이나 향후 운영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5. 평창 백룡동굴 관람가이드 운영·관리 민간 위탁

### 가. 제안사항

「평창 백룡동굴」 동굴 개방 활용 관람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평창 백룡동굴」 관람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주요경과
  - 2007. 3월 현상변경허가(백룡동굴 개방 및 생태학습형 체험동굴 활용)
  - 2009. 8월 백룡동굴 운영계획서 제출 및 공개제한 해제 신청(평창군)
  - 2010. 7월 「평창 백룡동굴」 공개제한 해제 고시 및 동굴 개방
  - 2013. 5월 「평창 백룡동굴」 개방활용기간 연장 현상변경 허가 신청
  - 2013. 5.24 「평창 백룡동굴」 개방활용기간 연장 현상변경 허가
    - 개방기간은 3년(2013.07.19~2016.07.18)으로 함
    - 이해관계자가 개방 종료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 동굴전문가를 채용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동굴 내의 온도, 습도, CO2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가이드 민간위탁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평창군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평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 지정일 : 1979. 2. 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동굴 개방 활용 관람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 사업내용
  - 민간위탁 대상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 ※ 문화재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는 평창군에서 직영·관리하고, 관람 가이드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에 한정하여 민간위탁 함
  - 위탁규모
    - 관람가이드 12명(도선운영 2명, 가이드 7명, 매표 및 운영 3명), 성수기 보조인력 4~6명
    - 1회 7명 이상 관람 시 2명의 가이드에 의해 인솔
  - 위탁기간 : 2013. 8월 ~ 2016. 7.18
  - 위탁조건
    - 기간 : 위·수탁 협약일~2015.12.31(기간 종료 시 성과분석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민간위탁비 보조 : 인건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년 1회 이상 감사)
    -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가이드 등) 고용 승계,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이수자 채용

#### 라. 검토의견 (\*\*\*\*\*)

- 동굴 개방활용기간 연장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조건인 동굴전문기관에 의한 정기모니터링 및 기술적 자문, 온·습도 및 CO2 측정기 설치, 정기적인 가이드 교육 등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준비 중이고,
-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가이드의 고용안정성,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등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굴의 관람인원, 관람회차, 수입금 등은 현재와 같이 평창군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므로 동 민간위탁이 지나친 수익성 추구 등으로 동굴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의견)

- 연계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 관리로 친절한 관람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
- 백룡동굴 근무자의 효율적 복무관리 및 다수의 지역 주민과 연계한 탄력적 인력 활용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6.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 - (1)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 사업내용
    - 규모 : 1층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194m<sup>2</sup> / 194m<sup>2</sup>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해당 지역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지정구역에 인접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7.10)

### <\*\*\* 문화재위원\* >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690-1번지에 높이 6.3m, 연면적 194.40㎡, 제1종근린 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임.
- 당해 사업위치는 현재 경작지로서, 신청 사업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서식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 본 지역은 겨울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서낙동강 중상류의 삼각주(중사도) 맞은편 수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수변부를 따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음.
- 본 신청부지 인근에는 4m 마을도로를 사이에 두고 3구역으로 설정되어 공장건물 등이 들어서고 있어, 신청부지 일대의 1구역은 문화재(서낙동강 철새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본 지역 일대의 1구역은 완충구역으로 현상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는 철새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위원 >

- 서낙동과 약50m 이격된 도로를 경계로 안쪽은 형질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경작지 또는 공지. 초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 대상지역도 동일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대상지 주변은 서낙동 철새도래지의 완충공간에 해당되는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본건이 승인될 경우 조건이 비슷한 대부분 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짐작됨

### < \*\*\* 문화재위원 >

- 건축 예정 지역은 서낙동강과 낙동강 사이에 발달한 사주의 서측변 하안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현재 이 지역 하안의 배후에는 2층 규모의 공장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하천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하안 지역은 자연 식생과 함께 원 지형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 지역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지역 철새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상기 지역에서의 건축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7.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 - (2)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 사업내용
    - 규모 : 1층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194m<sup>2</sup> / 194m<sup>2</sup>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해당 지역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지정구역에 인접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7.10)

### <\*\*\* 문화재위원\* >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690-1번지에 높이 6.3m, 연면적 194.40㎡, 제1종근린 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임.
- 당해 사업위치는 현재 경작지로서, 신청 사업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서식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 본 지역은 겨울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서낙동강 중상류의 삼각주(중사도) 맞은편 수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수변부를 따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음.
- 본 신청부지 인근에는 4m 마을도로를 사이에 두고 3구역으로 설정되어 공장건물 등이 들어서고 있어, 신청부지 일대의 1구역은 문화재(서낙동강 철새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본 지역 일대의 1구역은 완충구역으로 현상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는 철새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위원 >

- 본대상지는 서낙동과 약50m 이격된 위치로 형질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경작지 또는 공지. 초지로 유지되고 있음
- 대상지 주변은 서낙동 철새도래지의 완충공간에 해당되는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본건이 승인될 경우 조건이 비슷한 대부분 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 문화재위원 >

- 건축 예정 지역은 서낙동강과 낙동강 사이에 발달한 사주의 서측변 하안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현재 이 지역 하안의 배후에는 2층 규모의 공장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하천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하안 지역은 자연 식생과 함께 원 지형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 지역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지역 철새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상기 지역에서의 건축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8.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기 불허 되었으나 건축 규모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 2013. 5.24 야간조명, 인위적간섭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
- \* 2013. 6.26 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됨
- \* 2013. 7.10 천기분과위원장 등 현지조사 실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업인복지회관설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5-1번지
  -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면적	1,561.00m <sup>2</sup>	-	
건축면적	627.20m <sup>2</sup>	519.75m <sup>2</sup>	-107.45m <sup>2</sup>
연면적	1,542.14m <sup>2</sup>	1,260.25m <sup>2</sup>	-281.89m <sup>2</sup>
건폐율	40.18%	33.30%	-6.88%
용적율	98.79%	80.73%	-18.06%
층수	지상3층	-	
최고높이	16.0M	13.6M	-2.4M
사업명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	
지역,지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접합강판 , 노출콘크리트	옥상녹화(외벽녹화)	

\* 차폐를 위해 수변쪽으로 식재 배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건물 신축 대상지역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기존 규모 재·개축)하는 지역으로 건축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건물 신축부지의 문화재구역으로부터의 거리, 철새에 대한 영향, 문화재 주변 경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위원\*/'13.7.10>

- 강서농업인복지회관 2차 사업신청서는 1차 사업신청서와 비교하면, 건물의 높이를 16m에서 13.6m로 낮추고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을 등을 다소 낮추어 작성한 것임.
- 부산시 강서구 지역이 낙동강 하류의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서, 농업인복지회관의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됨.
- 현지조사 결과, 사업대상지역은 강에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서, 철새도래지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변경 신청한 건물도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됨.

<\*\*\* 위원\*/'13.7.10>

- 사업지는 하천경계구역과 도로(가락대로) 사이에 위치하며, 도로건너편에는 주거지역과 중, 고등학교가 있어, 사업지역 일대는 서낙동강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강서지역 일대 농경지는 낙동강하류 일대에 도래하는 철새의 먹이터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통한 미수확 벼존치, 벼짚존치, 무논조성 등 철새보전사업에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한 지역임
- 건물의 야간사용 금지 및 야간조명 미설치, 강변 차폐림 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 등의 설계보완으로 운영시 철새의 서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지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1구역인 점, 본 시설이 농업인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며, 낙동강 철새보전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13.7.10>

- 동 지역은 폭 약50m 거리의 도로를 경계로 바깥에는 이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과 접해있는 안쪽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경작지가 대부분임
- 강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라는 필요성을 감안한다지만 규모면에서 주변을 압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그러나 강서구청에 의하면 본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주변도 포함)에 포함되거나 농업인복지회관 등 공익사업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그 외 용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소유자들이 알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의 중요성과 낙동강철새도래지 관리주체인 지자체(강서구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13.7.10>

- 건축 예정 지역은 서낙동강 서측 하안의 천변 범람원 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현재 이 지역 하안의 서측 배후에는 도로가 지나가며, 도로 건너편에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 지역 하안의 남측에는 공장 건물 등이 들어서 있고, 북측에는 농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주변의 원 지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나, 사업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 하안 일대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및 잠자리 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임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지형변화에 의해 철새 서식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에서의 농업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명칭 그대로 이 지역 농업인의 복지문화를 제고시키기 위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임으로, 건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으로 인한 이 지역 철새들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할 때, 건물 신축은 이 지역이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보류

## 9.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광고탑 설치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광고탑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광고탑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 기존 낙동강 주변 광고탑을 이전 설치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광고탑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961-4,5
  - 사업내용
    - 토지형질변경

2	0	5 ( )
---	---	-------

- 광고탑 규모
  - 높이 : 27M / 규격 : 18M×8M / 재질 : 기둥형 스틸파이프
  - 사업기간 : 허가일 ~ '13. 8.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기존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1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고탑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점유면적이 넓지 않고 기존 강변방향에 있던 것을 고속도로변으로 이동조치 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7.10)

### <\*\*\* 문화재위원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4343-2(맥도강변 이격 15M)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광고탑 1기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961-4,5(맥도강변 이격 32M)의 고속도로변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맥도강 수문 앞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음.
- 수문 앞 맥도강에는 물담과 오리류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무리의 겨울철새가 월동하고 있음
- 27m 높이의 광고탑은 맥도강 철새의 이동비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위치보다 이전 예정지가 보다 비행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기간(약 10일)도 짧아 이전공사가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위원>

- 본 지주이용광고물은 도로변경 등 도시개발에 따라 기존광고물의 활용도가 낮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현재 맥도강변에서 15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을 맥도강변에서 32m 떨어진 지점(현재의 위치에서 약 250 m 북서측)인 고속도로변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임
- 이전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미미함으로, 철새도래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0.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휴게실 신축

### 가. 제안사항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휴게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휴게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6차 위원회 심의시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건으로 설계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 \* 2013. 6. 26 => 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결(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 서홍동장(서귀포시 중앙로 125)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 서식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 지정일 : 1962. 12. 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휴게실 신축(솜방천 지킴이 자원봉사자 휴게소)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223-7
  - 사업내용 :

	2 m <sup>2</sup>	0	2
	25m <sup>2</sup>	0	2
	0	0	0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 9.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허용기준 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대상지역은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무태장어 서식지에 인접해 있으나 솜방천 지킴이 자원봉사자 휴게시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 서식지 보호와 주변경관과의 조화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박사 미래양식연구센터/'13.6.11>

- 현상변경 요청 지역인 솜반천은 천연기념물 제 27호로 보호받고 있는 무태장어의 서식지임
- 이번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요청 받은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무태장어의 북방한계선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
- 문화재 보호법 제 3조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함에 입각하여 무태장어의 서식지에 부적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 변경 행위 및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솜반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 하천에 가까운 하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의 수목 생태계와 강의 수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변경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오탁방지 조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1.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인천 연구수 해송로 30번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 7. 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 \*\*\*\*\*
  - 사업내용 : 1~2m 성토

	2		8	8	
	2		8	8	
			8	8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3.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허용기준 1구역·2구역/기준규모 재개축/5m이하)

### 라. 검토의견(\*\*\*\*\*)

○ 해당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지역으로 유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성토를 통해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마. 의결사항 : 보류

## 12. 「장수하늘소」 포획 및 인공 증식

###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이대암(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으로부터 장수하늘소를 포획하여 복원 및 인공증식을 위한 학술연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장수하늘소의 복원 및 인공증식을 위하여 장수하늘소를 포획하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대표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3) 소재지 : 전국일원
- (4) 신청내용
  - 사업명 : 장수하늘소 복원 및 증식을 위한 학술 연구
  - 사업목적
    - 강원도 오대산 일대의 환경 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정밀한 조사계획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장수하늘소의 서식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생지내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인공적인 증식을 통해 자생지내 복원 및 자생지의 복원을 이루기 위함
  - 사업내용
    - 포획개체수 : 성충 4마리(암컷 2수, 수컷 2수)
    - 포획장소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일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대
    - 포획방법 : 포충망을 이용한 Beating법
    - 사육장소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604-1
  - 연구내용
    - 장수하늘소 서식·분포 정밀조사
      - 장수하늘소 육안 관찰 및 산란공, 탈출공 조사 등
      - 수액이나 활성제 또는 유인등을 이용한 성충 확인

- 기주식물 서식환경 및 주변 식생 평가·분석
  - 서어나무, 까치박달 및 고사목 분포면적과 기주식물 개체군 파악
  - 식생평가를 통한 장수하늘소 서식지 환경 분석
  - 장수하늘소 서식환경 위협요인 분석
- 증식용 개체 포획·원종확보 및 증식·복원방안 제시
  - 애벌레 및 성충 포획 등을 통한 증식용 원종확보
  - 포획된 원종을 활용한 체계적인 증식방안 제시
  - 복원 적지선정 등 복원방안 제시

#### 라. 검토의견(\*\*\*\*\*)

-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복원 및 증식을 위한 포획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으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포획이 절종위기의 장수하늘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 참고자료(서면검토의견 / '13.7.)

<국립수목원 \*\*\*박사>

-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지정되어 보호되는 곤충으로 과거에는 오대산, 춘천, 북한산 등에서도 서식이 알려졌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릉지역에서만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희귀곤충임.
- 그러나 광릉지역에 있어서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충이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모니터링에서 발견되는 탈출공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광릉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 장수하늘소의 개체수가 극히 적은 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서식하고 있는 장수하늘소의 보호 및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암·수 한 쌍의 포획은 그 지역의 서식 개체 유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또한 오대산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대에서는 현재 장수하늘소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약 성충이 발견된다면 이는 현지내 개체수가 극단적으로 적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성충 포획은 실제적인 지역적 멸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현지의 성충 확보를 통한 사육으로 현지내 복원개체를 확보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장수하늘소 사육에 대한 명확한 사육기술 등이 개발되고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성충 포획에 의한 절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수하늘소 성충의 포획보다는 철저한 서식실태 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또한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3. 「함양 상림」 주변 조형물 설치

#### 가. 제안사항

「함양 상림」 주변 조형물(공공미술작품 2종)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상림」 주변 조형물(공공미술작품 2종)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함양 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 지정일 : 1962. 12. 0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공미술작품 2종 설치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 신청내용 : 타워맨(목재 : 3,273mm×6,127mm), 산삼조형물(알루미늄 : 2,800mm×3,000m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6일간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50m 내외

#### 라. 검토의견(\*\*\*\*\*)

○ 조형물 설치 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7. 18.)

#####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 154호 함양상림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공림으로 현재 군민과 외래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본 현상변경 신청건은 문화재 1구역에 속하는 공원주차장에서 상림숲으로 들어가기 전 초입에 설치되는 것으로 상림은 실개천과 분리되어 있고 현재 이미 이곳은 잔디와 보도블럭, 벤치와 식재터널 등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조형물 '타워맨'의 경우 재질과 잔디와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삼조형물'의 경우는 재질 등이 조금 이질적으로 보이기 는 하나 경남문화재단 공모사업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용성이 강한 주차장과 공원지역인 제 1구역에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

○ 함양 상림 현상 변경과 관련하여 현지 조사 결과 조형물을 설치하여도 공간의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4.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13.6.26.)에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소명서만 첨부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 그간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 및 심의결과

구분	한국중부발전(주) (‘06.9월, ’07.1월, ’11.11월 신청)		(주)한국풍력에너지 (‘09.3, 4월, ’10.1월, ’11.11월 신청)	
신청 내용	1차 (‘06.9)	20MW(2.0MW×10기), 높이80m	1차 (‘09.3)	100MW(2MW × 5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40기
	2차 (‘07.1)	20MW(2.0MW×10기), 높이60m	2차 (‘09.4)	40MW(2MW × 2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15기
	3차 (‘12.11)	16MW(2MW×8기), 높이 80m	3차 (‘10.1)	20MW(2MW × 10기), 높이70m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2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문화재구역내 생태 및 경관의 추가적 훼손이 우려됨</li> <li>○ ‘07. 1.24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불허)</li> <li>- 생태적·경관적 훼손 우려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 3.25 문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09. 4.1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i> <li>- 다만, 천연보호구역 밖에서의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li> <li>- 협의가 될 경우 현지조사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1.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li> <li>- 협의가 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li> <li><b>* ‘12.11.30 허가신청 철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3.21 문화재위원 현지조사</li> <li>○ ‘13. 3.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ul>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구풍력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및 북면 일부
  - 지정일 : 1973.7.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풍력발전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 일대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20기[60MW(3MW×20기)], 높이 80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건은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3.6.26.)에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이나,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의 영향에 대한 소명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15. 「영월 고씨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영월 고씨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영월 고씨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일원
  - 지정일 : 1969. 6. 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지상1층 1동 신축(대지면적 : 860㎡, 연면적 88.54㎡, 높이 5.9m)
- (4) 문화재와의 거리 : 100m

###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지는 고씨굴 지상부에 위치해 있어 동굴로 유입되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의견)

- 전원생활을 위한 단독주택 신축이므로 현상변경 허가 필요

###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 7.18)

#### <\*\*\* 문화재위원>

- 석회암동굴인 천연기념물 제219호 고씨굴은 물이 빗어 놓은 소중한 자연유산으로서, 지상의 모습과는 판이한 지하 어둠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학술적·자연탐방학습적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 단독주택 신축예정지는 고씨굴이 발달해 있는 지상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상변경 허가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으로서 기존주택 개축만 가능)에 해당된다.
- 따라서 이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신축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 사. 의결사항 : 부결

## 1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주요경과
  - 2011. 1.10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2013. 2. 1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요청(서귀포시)
    - 용머리해안 주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용머리 침식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 2013. 3. 7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실시
    - 신청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을 1구역으로 설정하고 원형보존구역으로 관리
  - 2013. 7. 9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제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 지정일 : 2011. 1. 13.
- (3) 허용기준 변경(안)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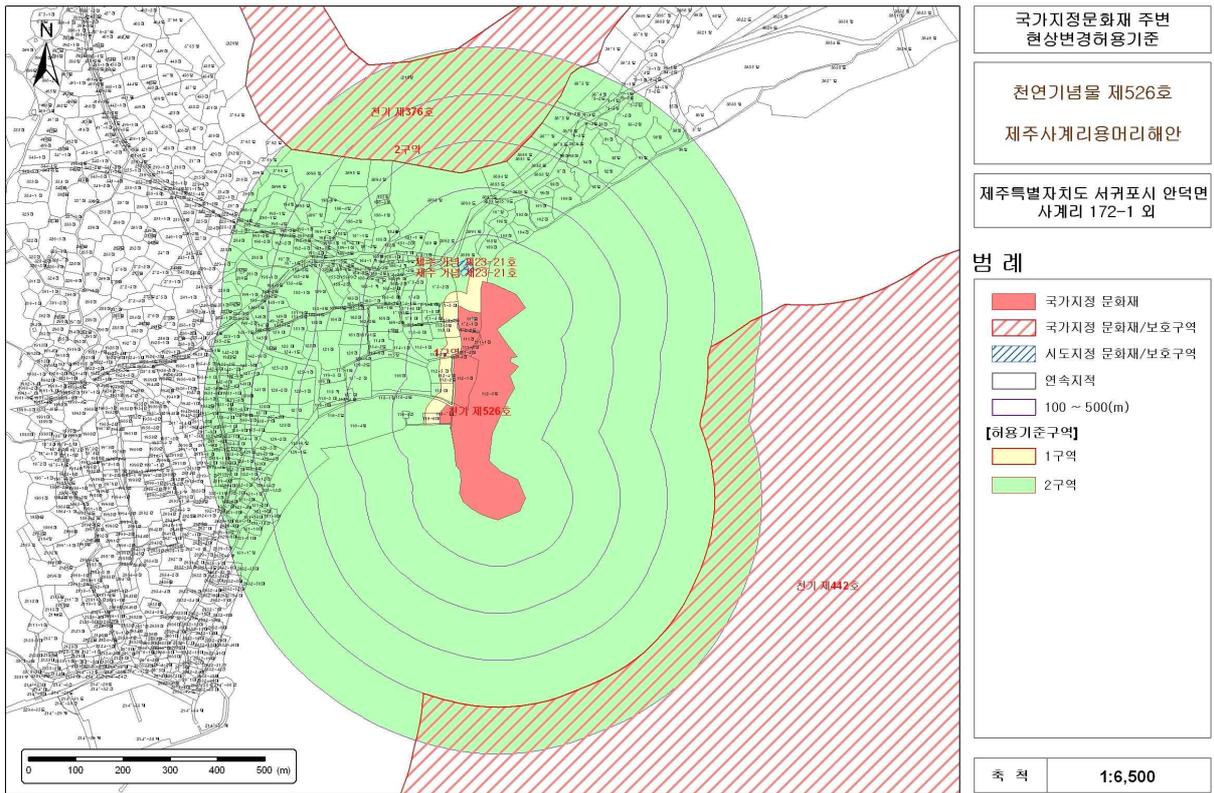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2구역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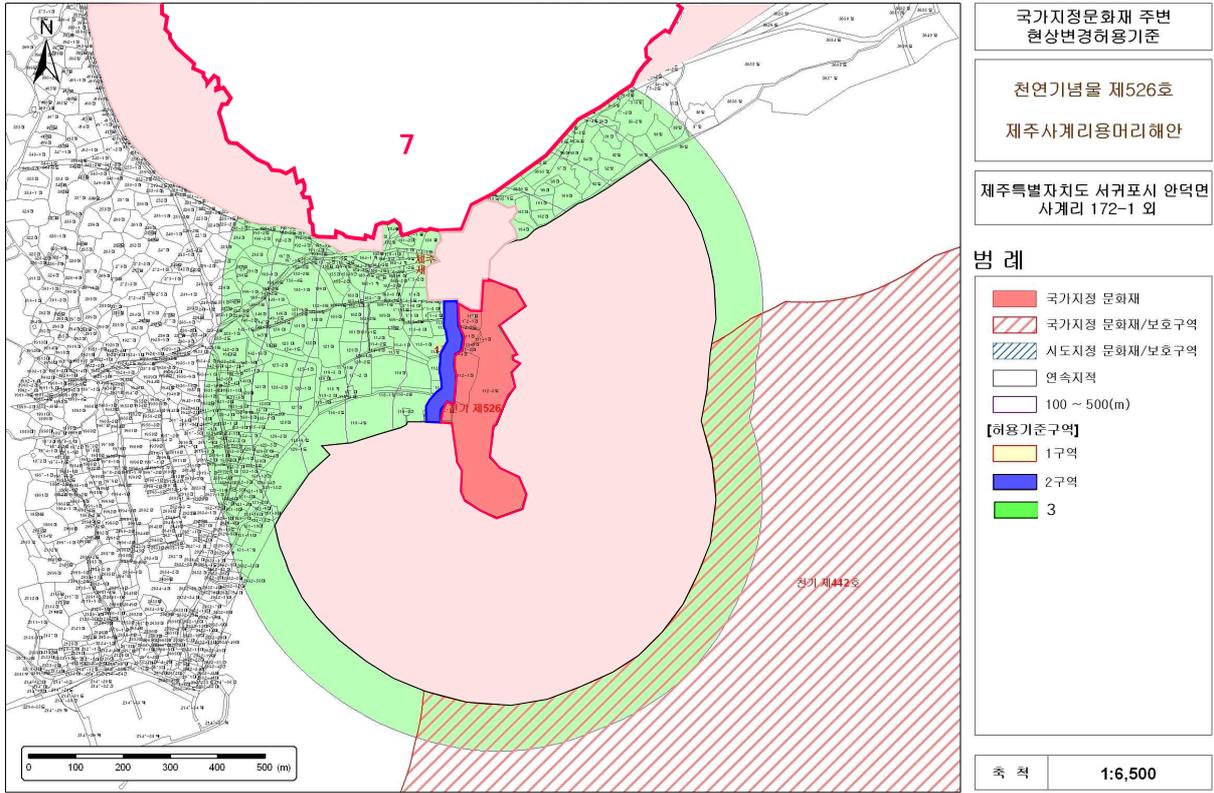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li> </ul>		

(4) 허용기준 도면

<현 행>



( )



라. 검토의견 (\*\*\*\*\*)

- 이번 허용기준 조정은 용머리해안 주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설공사에 의한 용머리 침식 등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변 해역부를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3.7)

<\*\*\* 문화재위원>

- ‘지정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현상변경 허가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보호구역 지정(안)’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현상변경 허가지역 지정(안)’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신청한 변경안은 수용하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문화재 지정구역이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지역도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

- 사계리 용머리해안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의 수성화산분출로부터 기원된 화산쇄설물퇴적층이 뛰어난 경관의 해안지형을 이루며 남북방향의 대상으로 발달한 지역으로, 이 수성화산쇄설층이 분포하는 육상 10필지 51,132㎡를 대상으로 지정구역이 고시되어 있다.
- 용머리해안 북동측의 화순항 서측에서 이루어진 방파제 축조 등의 영향으로 용머리해안 동측 해역에서의 조류 및 해파의 에너지와 운동방향 등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용머리해안 북동측에 발달한 황우치 해변의 백사장이 대폭 유실되어 현재 이곳 해변의 중앙부 대부분 지역에 암반이 새롭게 노출된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 현재 용머리해안 동측의 해역을 대상으로 잠제 및 방파제 등 각종 해양토목시설들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이 지역 해양에너지의 크기와 방향 등의 변화에 의해 용머리해안의 지형이 침식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 따라서 용머리해안의 원지형 보존을 위해 서귀포시에서 요청한 용머리 지선 기준 외곽 공유수면 400m까지를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머리해안 주변 해역의 물리적 해양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토목공사를 규제함으로써 용머리해안의 지형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지적도에 의한 필지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머리해안의 지정구역을 용머리해안의 실제 해안지형을 반영하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전 문화재위원>

- 용머리는 수성화산 폭발로 형성된 수성화산체로 내부퇴적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고, 해안에 연하여 위치하여 우수한 경관적 가치도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지부에 한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정하여 졌다. 그러나 당초 해안부분에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적 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일정구역 완충구역 설정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 다만 이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기 보다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1구역으로 설정하고 원형보존 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함께 현재 지정구역이 지적도 상의 지적경계로 설정되어 용머리 해안의 실측 경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지정구역을 해안 지역의 경우 연안의 일정 지점을 설정하여 직선 경계로 구획하는 것이 용머리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바. 의결사항 : 보류

## 17.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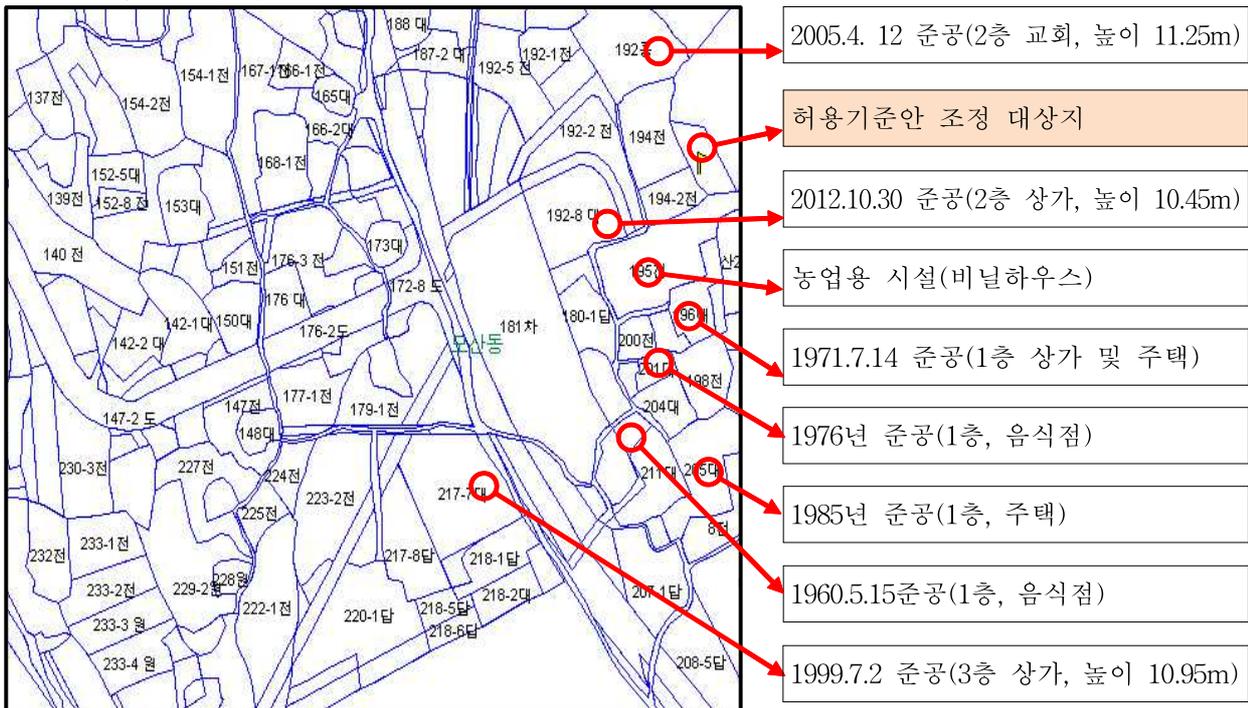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제천 의림지와 제림」 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천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3) 신청내용 :
- (4) 조정사유 : 주변지역과 형평성 고려
- (5) 신청내역 :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충북 제천시 모산동 산 17-6번지 1필지)은 이미 주변지역이 건축물이 설치되어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는 사안임.

#### ○ 주변 환경



○ 제천 의림지와 제림(명승 제20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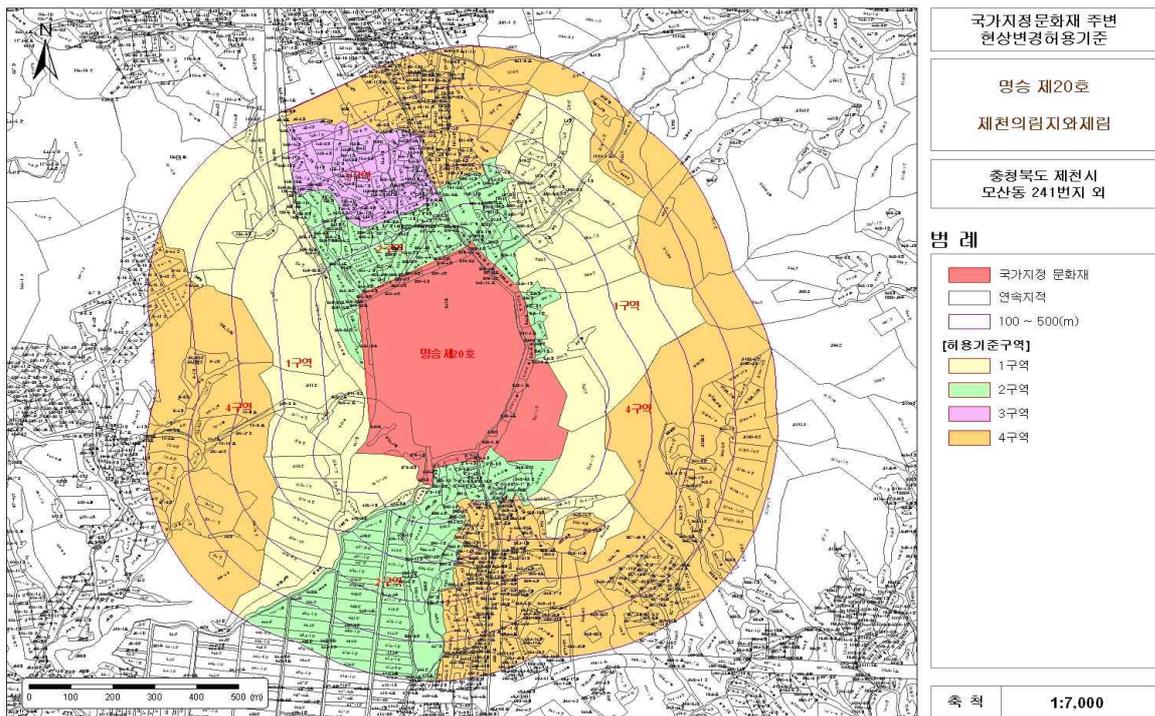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매장문화재 분포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3 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허용)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허용)	
4 구역	제천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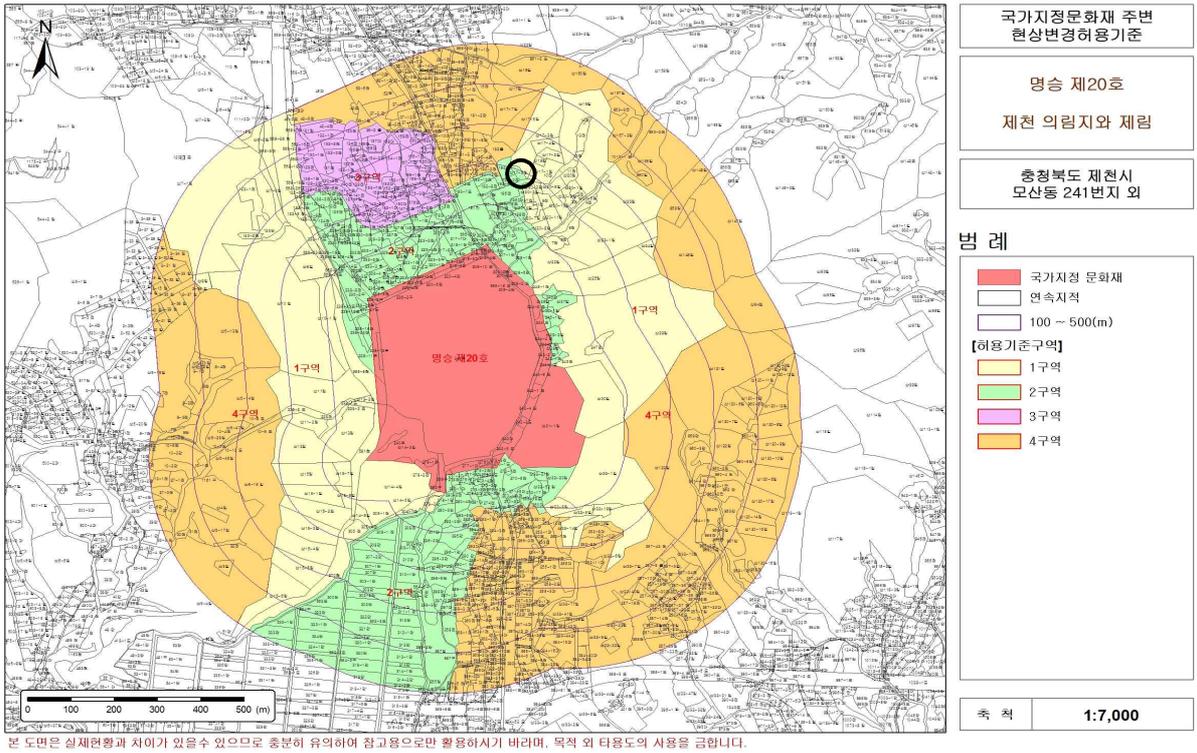
-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는 명승 제20호인 의림지와 제림과 210M의 이격거리를 보이고 있어 문화재의 경관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이며
- 당해 토지와 문화재와의 사이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에 허가된 건축물(준공 : 2012. 10. 30 / 2층, 11.9m)과 의림지 이벤트홀(위치 : 모산동 217-7번지 / 1999. 7 준공 / 3층) 등이 이미 건축물이 건립되어 해당 지역을 감싸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

마. 허용기준 도면

□ 변경전



□ 변경 후



바. 의결사항 : 부결

## 18. 「삼척 준경묘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삼척 준경묘 소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삼척 준경묘 소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 \* 추진경과
  - 2013. 07.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문화재위원등 3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삼척시장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삼척 준경묘 소나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8-2
  - 주요현황
    - 수 종 : 소나무
    - 수 령 : 107여년
    - 규 모 : 총1주

수관폭(W)		수고(H)	근원둘레(R)
동서	남북		
5m	5.5m	32m	3.14m

- 특징
  - 줄기가 곧고, 지하고가 높으며, 통직한 표현형을 간직함.
  - 줄기는 지상 약 25m까지 분지 없이 곧게 자랐으며, 줄기의 수피가 얇고, 아래쪽은 회갈색, 위쪽은 붉은색으로 전형적인 금강소나무의 특징을 띠며, 상부의 수관도 이 품종 특성대로 폭이 좁고 원추형임.
  - 전체적인 가지 발달은 방사방향으로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져 있으나 주변의 다른 소나무 영향인 듯 수관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
  - 산림청이 임업적 관점에서 정이품송의 배우자로 선정함.
- 유래 및 전설
  - 이 소나무는 지역에서 준경묘 소나무 또는 준경송, 왕송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사적 제524호 준경묘·영경묘 중 준경묘 경내에 위치한 수형목 20그루 가운데 하나(수형목 강원 제139호)일 뿐 준경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산림청이 임업적 관점에서 정이품송의 배우자로 선정함. 정이품송의 홍보를 위해 2001년 5월 8일 정이품송의 화분을 이 나무의 암꽃에 묻히는 혼례행사를 거행함.

○ 입지환경

- 이 소나무는 준경묘역 입구 우측 남사면(해발 약 268m)에 위치하며, 준경묘 진입로에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음. 나무의 근원 주위에는 폭 4~5m 정도의 직사각형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과의 혼례목임을 나타내는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음.
- 또한, 나무의 동북쪽과 서쪽, 남쪽, 북서쪽에는 최단거리 약 2~3m에 흉고둘레 1.5m 정도의 소나무 각 1주씩이 있고, 이들 나무의 외곽으로는 이 나무와 크기나 수형이 유사한 소나무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북서방향 약 4.5m거리에는 흉고둘레가 더 큰 소나무(흉고둘레 2.36m, 줄기기부에 송진 채취 흔적)가 한 그루 더 있음. 이들 소나무는 모두 수고가 준경묘 소나무와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상부에서는 수관부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준경묘 소나무의 수관폭이 약 5m 내외로 빈약한 것도 이러한 입지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외에도 나무 주위에는 작살나무와 산초나무가 흔히 보이고, 산뽕나무, 개암나무류, 개웃나무, 고광나무, 거북꼬리 등이 혼생하며, 아교목층에는 당단풍과 쪽동백, 붉나무 등이 낮게 층을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나무에 인접한 서북쪽 사면에는 당제 등의 흔적으로 보이는 사각형 돌담도 남아 있으나, 최근에 제를 지내거나 한 일은 없다고 함.

라. 검토의견(\*\*\*\*\*)

- 삼척 준경묘 소나무는 임업적 관점에서의 가치는 인정되나 독립수로서의 경관적 또는 역사성, 문화성 등이 부족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2013. 7. 4)

<\*\*\* 문화재위원>

- 본 소나무는 규격, 수령 등에서 기존에 지정된 소나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지고 수형 또한 금강송으로 곧게 자라 임업적 가치는 인정되나 독립수로서의 경관적 또는 역사성, 문화성 등이 부족하다.

- 준경묘, 영경묘의 소나무는 강원도 지역품종이라 할 수 있는 금강송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넓게 분포하고 있어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령이 대부분 100년 내외이며 균락으로서의 가치에 비해 개체별 가치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문화적 요소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해당 소나무는 노거수의 지정기준인 문화, 과학, 경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어렵지만 지방문화재 지정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문화재위원>

- 본 소나무는 여타 소나무와 비교할 때, 정이품송과의 혼례, 임업적 관점에서 우량한 재적 생장 등의 특성이 갖는 차별성은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소나무나 보호수로 지정된 여타의 소나무에 비해 역사성, 문화성, 학술적 가치 등은 짧거나 미미하다. 세월이 흐른 후, 추후 다양한 가치가 소개되고 발굴될 때 재고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할 만한 기준에는 미흡하다.
- 준경묘 일대의 소나무 숲은 우에기 호미키 교수가 1928년 소나무의 생육지역에 따라 분류한 금강형 소나무의 전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송례문과 광화문 등 중요 문화재의 복원 사업에 필요한 대경재 소나무를 조달했던 곳이다.  
이 소나무는 임업적 관점에서 보호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적, 경관적, 학술적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문화재 지정을 제안한다.

### <\*\*\* 전 문화재위원>

- 이 준경묘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소나무의 한 품종인 금강소나무 (*P. densiflora* for. *erecta* Uyeki)로서 대나무처럼 곧게 높이 자란 줄기에 수피의 색깔이 붉고 수형이 아름다워서 일반에서 ‘미인송’으로 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과의 전통혼례를 치른 사실로 많이 알려진 나무임.
- 뿐만 아니라, 전주이씨대동종약원 강원도지원(원장 이행진)은 이 나무를 준경송(濬慶松) 또는 왕송(王松)으로 부르며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 그러나, 이 준경묘 소나무는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들에 비해 수령이나 크기면에서 미흡하고, 전설과 유래 등 역사 문화적 가치성도 높이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준경묘 소나무는 학술적 대표성이나 역사문화성 등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19.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92.12.9) “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광역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 소유자 : 인천시 남동구 외
- 주요현황 : 1주, 수령 약800여년 추정

수관폭(W)		수고(H)	근원둘레(R)
동서	남북		
30m	31m	28.0m	8.9m

- 수형 및 외관
  - 줄기는 약 1.5m 높이에서 5개로 갈라졌고, 갈라진 줄기의 둘레는 각 2.8m, 2.9m, 3.4m, 3.7m, 4.7m이며, 수형은 반원형으로 단정함
  - 은행나무의 특징인 단지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대신 도장지가 많이 발생했으며 도장지 끝이 아래로 쳐져 멀리서 보면 거대한 버드나무류를 보는 듯하며, 상단부로 갈수록 잎이 현저히 작아짐
  - 재해예방을 위해 큰 가지마다 지지대 13개를 설치했고 위쪽 가지에는 몇 개의 쇠줄조임(브레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외과수술의 흔적도 있으나 줄기에 버섯 및 부후균들이 침입한 병징이 나타남

○ 주변 생육환경

- 주변으로 거마산, 성주산, 소래산, 관모산 등에 둘러 쌓여있으며, 은행나무 주변은 경작지이거나 간이식당 등이 위치하고, 인접하여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음
- 나무 근원 주위에는 직경 5m 정도로 둥글게 철재 울타리를 설치했고, 외곽 10여m 거리에 목재로 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놓았음. 예전에는 은행나무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흘렀으나 매립되어 평탄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복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유래 및 전설

- 이 나무의 유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다고 전해오고 있음.
- 이러한 민간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약 200여년 전부터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 마을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웃 간에 정을 나눴다고 함.
- 또한 은행나무의 어떤 부분(잎, 가지 등)도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있으며, 나무신이 마을에서 인제가 날 수 있는 기운을 모두 빼앗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장수는 하지만 인제가 귀하다고도 전해지고 있음.

**라. 검토의견(\*\*\*\*\*)**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크고 오래된 나무라는 가치는 있으나, 역사성·학술성 등에서 큰 특징이 없고, 복토 등에 의해 수세가 약해진 상태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2013.7.11)**

**<\*\*\* 문화재위원>**

- 동 은행나무는 규격이나 수형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손색이 없어 보이나 은행나무는 기 지정된 천연기념물(노거수) 전체 수량 172건 중 22주로 가장 많은 수종에 해당되며, 동 은행나무는 규격면에서 하위에 속함.
- 또한, 주변 하천을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심하게 복토되어 근본적인 처리 없이는 생육저하의 위험성이 있으나 주변 지형이 이미 많이 복토되어 있어 제거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은행나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 가치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기념물로 존치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타 은행나무와 비교할 때, 크기는 중간 정도이며, 제출된 자료나 또는 주변 주민들의 증언으로 역사적·문화적·학술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 등을 찾을 수 없었음.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복토된 부지의 원상회복 등이 선행될 경우, 추후 천연기념물 지정을 재고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선정할 만한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 前 문화재위원>

- 이 은행나무는 크고 오래된 나무이며, 신령스러운 마을의 수호목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것으로 생각됨. 특히 이 나무는 도시의 마을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목신제(木神祭)가 이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나무의 상태를 살펴 각종 보도매체에 소개하고 있을 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무인 것은 확실함.
- 그러나 이 은행나무의 규모는 현재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22건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정도가 못됨. 참고로 이미 지정된 22건 은행나무의 흉고둘레 평균이 11.56m인데 비해 이 은행나무는 근원둘레가 8.93m임.
- 또한, 이 나무가 비록 오랜 기간 마을의 수호목으로서 역할을 해 왔고 목신제가 행해져 온 나무라고는 하나 주변 지형이 많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그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세도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판단되었음. 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약화되었고 잎들이 극히 작아진 것도 하천의 유로 변경과 복토 등 주변 지형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은행나무는 그 대표성 면에서나 역사 문화적 가치 면에서 볼 때 국가 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보고사항】**

천기 2013-07-20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9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신청인 : 서귀포시장 ○ 허가사항 - 사업명 : 재난예방(하천감시용)을 위한 CCTV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 사업내용 : 재난예방(하천감시용)을 위한 CCTV 1기 설치 ○ 허가기간 : 2013.7.1. ~ 2013.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허가사항 - 사업명 : 연산호 이식 연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4번지 - 사업내용 : 연산호 이식 연구를 위한 용암석 마린 블록 6개 설치 및 모니터링 ○ 허가기간 : 2013.7.22. ~ 2014.12.31. ○ 허가조건 - 수중 구조물 설치 및 철거 시 해양생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구조물이 조류에 유동되지 않도록 고정	<허가>
	천연기념물 제459호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등 3건	○ 신청인 : 동부지구관리소장 ○ 허가사항 - 사업명 :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 대상 :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59호), 창덕궁 뽕나무(천연기념물 제471호),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504호) - 채취내용 : 삽수(30개체) ○ 허가기간 : 2013.6.28. ~ 2013.8.14. ○ 허가조건 - 사전에 작업일정 등을 각 관리소와 협의 후 시행 - 계획서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가지 채취 시 문화재 고유수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영월군수</li> <li>○ 허가사항 : 고씨굴 공개시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09:00~18:00</li> <li>- 연장 : 09:00~20:00</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 7. 20 ~ 2013. 8. 17(29일간)</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510호 평창 섭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 ***</li> <li>○ 허가사항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72/175번지 산림 별채 및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채 및 조립 면적 : 2.1ha(172번지 0.9ha/175번지 1.2ha)</li> <li>- 별채수종 및 예정수량 : 낙엽송 1,560본</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 12. 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직무대리 ***)</li> <li>○ 허가사항 : 제주 수월봉 화산퇴적층 학술연구 시료 채취,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SL 시료, 탄소연대분석용 시료, 대자율 분석용 cubic 시료 채취 시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량을 채취</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07.15~07.31(작업일수 2일)</li> </ul>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명승 제24호 오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부산광역시</li> <li>○ 허가사항 : 도시계획시설 이기대수변공원내 자연마당 신설</li> </ul> <table border="1" data-bbox="481 1115 1299 1317"> <thead> <tr> <th>구분</th> <th>우점수종</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식생복원 A타입</td> <td>팽나무/굴거리나무/후피향나무</td> <td>m2</td> <td>33.8</td> </tr> <tr> <td>식생복원 B타입</td> <td>소사나무-팽나무/가시나무류</td> <td>m2</td> <td>59.5</td> </tr> <tr> <td>식생복원 C타입</td> <td>애기동백나무/천선과나무/동백나무-아왜나무</td> <td>m2</td> <td>236.9</td> </tr> <tr> <td>식생복원 D타입</td> <td>팽나무/가시나무류/우목사스레피-가시나무류</td> <td>m2</td> <td>137.6</td> </tr> <tr> <td>보존립</td> <td>천이 관찰 식재지 (해안압반)</td> <td>m2</td> <td>6,587.0</td> </tr> <tr> <td>합계</td> <td></td> <td>m2</td> <td>7,054.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설치</li> </ul> <table border="1" data-bbox="481 1348 1299 1621"> <thead> <tr> <th>시설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셉터</td> <td>그늘막, 2992x4340x4340</td> <td>개소</td> <td>2</td> </tr> <tr> <td>평의자</td> <td>1800x525xH510, 섹터하부</td> <td>개소</td> <td>6</td> </tr> <tr> <td>먹이피라미드 조형물</td> <td>H2200</td> <td>개소</td> <td>1</td> </tr> <tr> <td>하이브리드등</td> <td>H3500</td> <td>개소</td> <td>3</td> </tr> <tr> <td>종합안내판</td> <td>2280x320xH2000</td> <td>개소</td> <td>3</td> </tr> <tr> <td>이용안내판</td> <td>1180x220xH1540</td> <td>개소</td> <td>2</td> </tr> <tr> <td>퀴즈해설판</td> <td>1180x220xH1540</td> <td>개소</td> <td>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li> </ul> <table border="1" data-bbox="481 1653 1299 1859"> <thead> <tr> <th>포장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투수블럭포장</td> <td>200x100(200)xT60</td> <td>m2</td> <td>2</td> </tr> <tr> <td>잔디블럭포장</td> <td>T60, 보행자용</td> <td>m2</td> <td>9</td> </tr> <tr> <td>자연석판석포장</td> <td>T100, 부정형</td> <td>m2</td> <td>0</td> </tr> <tr> <td>자연석계단</td> <td>W2000x5단</td> <td>개소</td> <td>3</td> </tr> <tr> <td>녹지경계석</td> <td>150x150x1000</td> <td>m</td> <td>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배수관</li> </ul> <table border="1" data-bbox="481 1890 1299 1989"> <thead> <tr> <th>시설명</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상수관</td> <td>D50</td> <td>m</td> <td>8</td> </tr> <tr> <td>Q.C밸브</td> <td>-</td> <td>개소</td> <td>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12. 31.</li> </ul>	구분	우점수종	단위	수량	식생복원 A타입	팽나무/굴거리나무/후피향나무	m2	33.8	식생복원 B타입	소사나무-팽나무/가시나무류	m2	59.5	식생복원 C타입	애기동백나무/천선과나무/동백나무-아왜나무	m2	236.9	식생복원 D타입	팽나무/가시나무류/우목사스레피-가시나무류	m2	137.6	보존립	천이 관찰 식재지 (해안압반)	m2	6,587.0	합계		m2	7,054.8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셉터	그늘막, 2992x4340x4340	개소	2	평의자	1800x525xH510, 섹터하부	개소	6	먹이피라미드 조형물	H2200	개소	1	하이브리드등	H3500	개소	3	종합안내판	2280x320xH2000	개소	3	이용안내판	1180x220xH1540	개소	2	퀴즈해설판	1180x220xH1540	개소	5	포장명	규격	단위	수량	투수블럭포장	200x100(200)xT60	m2	2	잔디블럭포장	T60, 보행자용	m2	9	자연석판석포장	T100, 부정형	m2	0	자연석계단	W2000x5단	개소	3	녹지경계석	150x150x1000	m	8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상수관	D50	m	8	Q.C밸브	-	개소	1	<허가>
구분	우점수종	단위	수량																																																																																																
식생복원 A타입	팽나무/굴거리나무/후피향나무	m2	33.8																																																																																																
식생복원 B타입	소사나무-팽나무/가시나무류	m2	59.5																																																																																																
식생복원 C타입	애기동백나무/천선과나무/동백나무-아왜나무	m2	236.9																																																																																																
식생복원 D타입	팽나무/가시나무류/우목사스레피-가시나무류	m2	137.6																																																																																																
보존립	천이 관찰 식재지 (해안압반)	m2	6,587.0																																																																																																
합계		m2	7,054.8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셉터	그늘막, 2992x4340x4340	개소	2																																																																																																
평의자	1800x525xH510, 섹터하부	개소	6																																																																																																
먹이피라미드 조형물	H2200	개소	1																																																																																																
하이브리드등	H3500	개소	3																																																																																																
종합안내판	2280x320xH2000	개소	3																																																																																																
이용안내판	1180x220xH1540	개소	2																																																																																																
퀴즈해설판	1180x220xH1540	개소	5																																																																																																
포장명	규격	단위	수량																																																																																																
투수블럭포장	200x100(200)xT60	m2	2																																																																																																
잔디블럭포장	T60, 보행자용	m2	9																																																																																																
자연석판석포장	T100, 부정형	m2	0																																																																																																
자연석계단	W2000x5단	개소	3																																																																																																
녹지경계석	150x150x1000	m	8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상수관	D50	m	8																																																																																																
Q.C밸브	-	개소	1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봉화군수</li> <li>○ 허가사항 : 닭실-금봉문화마을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공 : 터파기 V=10,010.0m<sup>3</sup>, 되메우기 V=7,674.0m<sup>3</sup>, 관보호공 L=128.0m</li> <li>-관로공 : 내충격수도관(D16) L=3,252.0m, 내충격수도관(D30) L=1,412.0m, 내충격수도관(D50) L=936.0m, 내충격수도관(D75) L=18.0m, 내충격수도관(D100) L=4,041.0m</li> <li>-구조물공 : 공기변실 1개소, 소화전 보호공 4개소</li> <li>-부대공 : 1 식</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 12. 31.</li> </ul>	<허가>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순천시장</li> <li>○ 허가사항 : 조계산 큰굴목골, 장군봉~ 접치정상, 접치정상~장박골 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교설치 1개소, 통나무계단정비 1식, 침목설치 1식</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12.31.</li> </ul>	<허가>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li> <li>○ 허가사항 : 농사용 가설창고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면적 : 36m<sup>2</sup></li> <li>- 컨테이너(7m*3m), 조립식창고(5m*3m)</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 9. 30.</li> <li>○ 조건부 허가 : 농업용 가설창고로만 시설허가하며, 다른 용도 변경사용은 불가</li> </ul>	<허가>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li> <li>○ 허가사항 :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국도36호선 대흥5-1지구외 2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사업</li> </ul> <p><b>&lt;대흥5-1지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공 : 벌목 A=1,570m<sup>2</sup>, 낙석방지망 A=1,550m<sup>2</sup></li> <li>- 배 수 공 : J형측구복개 : L=117.0m</li> <li>- 구조물공 : L형옹벽 L=95.0m</li> <li>- 부 대 공 : 낙석방지울타리 옹벽용 L=95.0m</li> <li>- 부 대 공 : 낙석방지울타리 L=62.0m</li> </ul> <p><b>&lt;대흥9지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 수 공 : J형측구복개 : L=117.0m</li> <li>- 부 대 공 : 낙석방지울타리 토공용 L=39.0m</li> </ul> <p><b>&lt;계전5지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공 : 낙석방지망 A=357.0m<sup>2</sup></li> <li>- 배 수 공 : J형측구복개 : L=98.0m</li> <li>- 구조물공 : L형옹벽 L=88.0m</li> <li>- 부 대 공 : 낙석방지울타리 옹벽용 L=88.0m</li> </ul>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 12. 31.</li>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서울대공원장</li> <li>○ 허가사항 : 사육(전시 및 증식)</li> <li>○ 허가기간 : 2013. 7. 8. ~ 2018. 7. 7.</li> <li>○ 개체수 : 흰꼬리수리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 (전라북도 완주군)</li> <li>○ 허가사항 : 사육(보전과 증 번식)</li> <li>○ 허가기간 : 2013. 7. 16. ~ 2018. 7. 15.</li> <li>○ 개체수 : 원앙 6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국립문화재연구소)</li> <li>-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li> <li>-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영월곤충박물관)</li> </ul> </li> </ul>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59호 달마산 미황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대한불교 조계종 달마산 미황사</li> <li>○ 사업명 : 달마산 미황사 내 간이 샤워실 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원</li> <li>- 사업내용 :</li> </ul> </li> </ul> <p>&lt;기허가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황사 내 간이 샤워실 개축(1동 60㎡)</li> <li>○ 허가기간 : 2012. 8. 9 ~ 2013. 6. 30</li> </ul> <p>&lt;변경허가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변동없음</li> <li>○ 허가기간연장 : 2012. 8. 9 ~ 2014. 6. 30</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건물 신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40-1번지</li> <li>*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1m</li> </ul> </li> </ul> <p>&lt;변경허가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면적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유효대지면적 1,050㎡(지상2층, 9.2m), 건축면적/연면적 151.38㎡/207.73㎡, 철근콘크리트조</li> <li>- (변경) 유효대지면적 964㎡(지상2층, 9.2m), 건축면적/연면적 156.0㎡/207.28㎡, 경량철골구조</li> </ul> </li> <li>○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허가일~2013.9.30 → (변경) 허가일~2013.12.31.</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삼동면 지족어촌계</li> <li>○ 사업명 : 바지선 이설 및 추가 설치</li> </ul> <p>&lt;기허가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26-13번지 앞 공유수면</li> <li>○ FRP바지선(7m*12m) 1대</li> </ul> <p>&lt;변경허가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91-11번지 앞 공유수면</li> <li>○ FRP바지선(8m*10m) 1대, 목재바지선(7m*10m) 2개소</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범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한국**기지국(주)</li> <li>○ 사업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li> </ul> <p>&lt;기허가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리산 범주사 일원 내 상고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1기</li> <li>- 통신주 규모 : 면적 78㎡, 높이 21m(산림형 IP주), 휨스 높이 1.8m×길이16m, 전기지중화작업 길이 32m</li> </ul> </li> </ul> <p>&lt;변경허가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증설을 위한 분전함 설치 1식</li> </ul> </li> <li>○ 허가기간 : 2012.10.30~2013.12.31</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합천군수</li> <li>○ 사업명 : 군도 17호선 대기차선 설치공사 허가사항 기간연장 변경허가</li> </ul> <p>&lt;기허가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동없음.</li> </ul> </li> </ul> <p>&lt;변경허가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11.10.27~2013.12.3</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결사항 : 원안 접수